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935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774호)	주호영의원 등 10인	2024.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9.5.)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388호)	장경태의원 등 12인	202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3	<p>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119호)</p>	<p>위성락의원 등 11인</p>	<p>2024.7.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4	<p>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166호)</p>	<p>박선원의원 등 18인</p>	<p>2024.7.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5	<p>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437호)</p>	<p>인요한의원 등 12인</p>	<p>2024.7.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6	<p>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510호)</p>	<p>강유정의원 등 11인</p>	<p>2024.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627호)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671호)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836호)	강승규의원 등 25인	2024.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041호)	윤상현의원 등 11인	2024.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154호)	김건의의원 등 10인	2024.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160호)	이성권의의원 등 39인	2024.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164호)	김석기의의원 등 13인	2024.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537호)	장동혁의원 등 14인	2024.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959호)	박지원의원 등 15인	2024.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4. 9. 23. 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상정/축조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568호)	이건태의원 등 11인	2024.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20. 상정/심사</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01.) 상정/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364호)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5.05.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5. 11. 11.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20. 상정/심사</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01.) 상정/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474호)	신장식의원 등 11인	2025.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5. 11. 11.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11.20. 상정/심사</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12.01.) 상정/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0507호)	김용민의원 등 25인	2025.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5. 11. 11.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11.20. 상정/심사</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12.01.) 상정/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789호)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5.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2025. 11. 11.자로 직접 회부</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11.20. 상정/심사</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12.01.) 상정/심사/의결</li> <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심사/의결</li> </ul>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13.)는 위 1 ~ 15의 법률안 1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는 위 16 ~ 20의 법률안 5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2.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함.
- 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는 위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기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2건의 대안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의결함.
- 마.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2. 3.)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

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한편,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 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왜곡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처벌(안 제98조의2 신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나. 법왜곡죄 처벌(안 제123조의2 신설)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幫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p> <p>&lt;신 설&gt;</p>	<p>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lt;삭 제&gt;</p> <p>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第99條(一般利敵) 前7條에 記載한 以外에 大韓民國의 軍事上 利益을 害하거나 敵國에 軍事上 利益을 供與한 者는 無期 또는 3年 以上の 懲役に 處한다.</p>	<p>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第100條(未遂犯) 前8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01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 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以上の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 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 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02條(準敵國)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

第104條(同盟國) 本章의 規定은 同盟國에 對한 行爲에 適用한다.

<신 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할 경우